

지원 주거 생활 및 요양 생활

서비스 정의

요양 생활은 노인 및 성인, 장애 아동(AD)을 위한 HCBS 면제 제공되며, **지원 주거 생활**은 외상성 뇌 손상(TBI) 면제로 제공됩니다.

이 두 서비스 모두 요양 시설에서 생활하는 참가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가정과 같은 비시설 주거 환경에서 존중, 독립성, 개성, 프라이버시 및 존엄성을 통합하는 결정에 참가자의 자기 주도성과 참여를 촉진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관리 활동, 일상 생활 활동(ADL), 수단적 일상 생활 활동(IADL), 건강 유지, 예정된 또는 예측 불가능한 참가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24시간 대응 능력에 대한 지원 또는 제공이 포함됩니다. 서비스는 감독, 안전 및 보안을 제공합니다.

제공 조건

- A.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은 참가자 평가 중에 파악하여 사람 중심 계획(PCP)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B. 각 참가자에 대한 상주 서비스 계약(RSA)이 있어야 합니다.
 1. 참가자, 서비스 코디네이터, 제공업체는 필요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수정해야 하지만 최소한 매년 검토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원본과 수정본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RSA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참가자가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및 치료법.
 - b. 특별한 식단 요구 사항.
 - c. 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
 - d. 최소한 다음 요건이 포함된 임대 계약서.
 - i. 개인 및 요양 생활 제공자의 동의.
 - ii. 퇴거 보호를 포함하여 175 NAC 4의 요양 생활 시설 허가 요건을 준수.
 - iii. 개인에게 다음의 권리가 있다는 진술서:
 - (1) 룸메이트가 필요한 경우 룸메이트 선택 가능,
 - (2) 자신의 주거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된 사생활 및 보안,
 - (3) 거실 장식,
 - (4) 언제든지 원하는 방문자를 초대할 권리,
 - (5) 자신의 일정과 활동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유와 지원, 및
 - (6) 언제든지 음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iv. 각 제공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환경은 참가자가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v. 참가자의 권리 또는 임대 계약 조건의 수정은 구체적인 평가된 필요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PCP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 (1) 개인의 특정 평가된 요구 사항 인식,
- (2) 수정 전에 사용된 긍정적인 개입 및 지원에 대한 문서화,
- (3) 이미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덜 침입적인 방법에 대한 문서화,
- (4) 필요한 권리 또는 임대 계약 수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평가된 특정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방법,
- (5) 수정의 지속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검토,
- (6) 수정이 여전히 필요한지 또는 종료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정기 검토 시간 제한을 설정, 및
- (7) 개인의 사전 동의.

C.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참가자의 요구가 제공자의 능력이나 역량을 넘어선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공자, 서비스 코디네이터, 참가자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D. 지원 주거 생활 및 영양 생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서비스 구성 요소가 포함되며,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PCP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참가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 사회화: 참가자의 필요에 맞춘 구조화된 사교, 레크리에이션 및 건강 활동입니다. 거주 생활 제공자는 생활 환경에서 사회화 활동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하우스키팅: 청소: 먼지 털기, 진공청소기, 바닥 청소, 욕실 청소, 침대 만들기 및 교체 등 공용 공간과 참가자의 개인 숙소를 청소합니다.
 - a. 침대 시트는 더러워지면 교체하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체해야 합니다.
 - b. 깨끗한 타올을 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 c. 참가자가 원할 경우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이 허용하는 한 가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세탁: 참가자의 의류를 세탁, 건조, 접고 방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 a. 드라이클리닝은 참가자의 책임이지만, 필요한 경우 시설에서 이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 참가자가 원할 경우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이 허용하는 한 세탁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식사: 하루 세 끼, 주 7일 제공.
 - a. 식사는 반드시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i. 성인의 일일 최소 영양소 요구량의 1/3 이상을 함유하는 적절하게 조리된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 및
 - ii.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문화적, 개인적 선호도를 고려.
 - b. 식사 메뉴가 한 가지만 제공되는 경우 개인을 위한 추가 옵션이 있어야 합니다.
 - c. 메뉴는 다음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i. 가능한 한 거주 인구의 음식 선호도를 반영.
 - ii. 참가자가 적시에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함.
 - d. 식사 사이에 간식은 요청 시 제공.
- 5. 약물 치료 지원: 참가자가 요청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처방약 및 비처방약 투여에 대한 지원.
 - a. 적절한 수준의 약물 치료 지원은 175 NAC 4에 설명된 대로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 b. 참가자의 약물에 대한 의료 제공자의 관여 수준은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PCP)가 확인한 항목 및 서비스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 c. 참가자가 자가 투약이 가능한 경우, 참가자는 약국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i. 참가자가 스스로 약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거주 생활 제공자는 제공자가 사용하는 권장 약국을 명시하여 참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ii. 주 면허 요건에 따라, 제공자가 입원 전 또는 시설에서 특정 약국 제공자와 계약을 변경하기 30일 이내에 참가자에게 통지한 경우, 참가자의 약국 선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d. 요양 생활 시설에서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의 제공자 자격은 요양 생활 시설 허가 규정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 6. 교통 서비스: 거주 생활 제공자는 각 참가자의 필요에 따라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a. 의료진은 매월 필요한 경우 최소 5회 이상 왕복 진료 예약을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 i. 왕복 거리가 50마일을 초과하거나 한 달에 5회 이상인 경우 의료 교통편에 대한 추가 환급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 b. 제공자는 참가자의 PCP에 확인된 활동 및 자원에 대한 왕복 교통편을 합리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c. 제공업체는 최소 요건을 초과하는 교통편을 마련하기 위해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E. 지원 주거 생활 및 요양 생활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구성 요소가 포함되며, 이는 참가자의 PCP에서 평가된 필요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제공자가 각 참가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1. 에스코트 서비스: 참가자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 한, 혼자 여행하거나 대기할 수 없는 참가자를 동행하거나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a. 현지 목적지까지의 차량 및 장소 이동을 지원.
 - b. 생활 환경을 떠나 있는 동안 참가자에게 감독 및 지원을 제공하거나 주선.
 - i. 감독 및 지원 제공자는 참가자가 생활 환경으로 돌아갈 때까지 참가자와 동행합니다.
 - 2. 필수 쇼핑: 참가자가 쇼핑을 할 수 없는 경우 참가자를 위한 의류 및 개인 위생용품을 구입합니다. 여기에는 참가자의 구매에 대한 자금 조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건강 유지 활동: 제공자는 다음의 복잡하지 않은 개입을 포함할 것입니다:
 - a. 정확한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b. 표준 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 c.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예측 가능한 결과와 참가자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 i. 키와 몸무게를 기록,
 - ii. 혈압 모니터링,
 - iii. 혈당을 모니터링하고 참가자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우 인슐린 주사를 제공, 및
 - iv. 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고 부수적인 간호 및 숙련된 치료 서비스.
 - (1) 24시간 숙련된 치료에 대해서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 (2) 이 서비스에는 숙련된 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개인 관리 서비스: 참가자가 최대한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 관리가 제공됩니다.
 - a.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일상 생활 활동(ADL)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i. 식사: 식사 지원에는 포장 개봉, 음식 자르기, 양념 넣기 및 참가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기타 활동이 포함됩니다.
 - (1) 참가자가 도움 없이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제공자는 참가자에게 먹이를 주거나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 ii. 목욕: 목욕 일정과 관련하여 참가자의 선호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RSA에 명시된 횟수를 초과하여 필요한 추가 목욕에 대해 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iii. 이동성: 실내 또는 실외에서 장소를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iv. 옷 입기/손질: 상체 및 하체에서 필요에 따라 옷을 입고 벗는 것을 지원합니다. 일상적인 개인 위생을 위한 지원.
 - v. 화장실: 화장실 이동, 의복 관리, 세정 등 화장실에 오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 vi. 이동: 이동: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등받이로, 차량 안팎으로 이동하는 등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vii. 요실금: 요실금 팬티 또는 패드 교체, 세척, 더러워진 물품 폐기 등을 지원합니다.
 - b. 이러한 서비스에는 개인 관리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며 개인 관리 서비스에 대한 추가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공자 요구 사항

- A. 모든 면제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메디케이드 제공자일 것,
 2. 네브래스카 행정법 및 네브래스카주 법령의 적용가능한 조항을 모두 준수할 것,
 3. 메디케이드 및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자 계약에 설명된 기준을 준수할 것,
 4. 요청 시 DHHS 교육 이수할 것,
 5. 보편적인 예방 조치를 사용해야 할 것.

- B. TBI 면제 제공자는 지원 주거 생활을 제공하기 전에 DHHS가 승인한 TBI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C. 요양 생활 및 지원 주거 생활은 요양 생활 제공자로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D. DHHS는 처음에 요양 생활 제공자를 등록하고 모든 해당 연방, 주 및 지역 법률과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직접 현장 방문을 실시합니다.
- E. 각 요양 생활 제공자는 DHHS의 면허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 외에 최소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HCBS 면제 서비스의 요양 생활(AL) 제공자로 허가 및 인증을 받았습니다.
 - 2. 각 면제 참가자에게 화장실과 세면대로 구성된 욕실이 있는 개인실을 제공합니다.
 - a. 준개인실은 사례별로 고려되며 DHHS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3. 상호 소유의 요양 시설과 인접한 경우 175 NAC 4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4. 요양 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을 위한 정책, 절차, 활동, 식사 및 공용 공간을 마련하세요.
 - 5. 직접 돌봄 직원에 관리, 세탁, 청소, 식사 또는 유지보수 직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 6. 참가자에게 이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최소한 침대, 옷장, 헤파크 또는 테이블, 의자 등 필수 가구를 제공합니다.
 - 7. 최소한 비누, 샴푸, 화장지, 세안 티슈, 세탁 비누, 치과 위생용품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위생용품을 제공하세요. 기타 개인 제품이나 브랜드 선택은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 8. 잠글 수 있는 문을 포함하여 유닛 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참가자가 시설과 개별 아파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9. 개별화된 참가자 요청 거부에 대한 검토를 위한 고충 처리 절차를 제공합니다. 개별화된 참가자 요청에 대한 거부는 제기된 모든 불만 사항의 결과를 포함하여 PCP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 F.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친척이나 보호자가 인가된 생활 보조 시설의 직원 또는 소유주여야 합니다.
- G. 각 제공자는 다음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1. 자격, 경험, 입증된 능력에 따라 직원을 고용,
 - 2. 직원이 필요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을 제공,
 - 3. 교육 계획을 DHHS에 제공하는 데 동의, 및
 - 4. 적절한 가용성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
- H. 각 시설은 해당되는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화재, 보건 및 기타 법률이나 규정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치료 장소는 의료 제공자 소유 및 운영 환경에 대한 최종 설정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적어도 매년 리소스 개발자(RD)가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요금

- A. 결제 금액은 모든 주거 서비스 비용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 B. 지원금에는 주거비, 식비, 편의용품, 시설 유지, 보수 및 개선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참가자가 또는 참가자를 대신하여 시설에 지불한 숙식 비용으로 충당됩니다.
- C. 요금은 DHHS에서 설정하며 매년 또는 주 의회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 제공자는 네브래스카 메디케어 및 장기 요양(MLTC) 제공자 게시판을 통해 요금 변경 사항을 통보받습니다. 수수료 일정 페이지는 네브래스카 DHHS 웹사이트의 제공자 게시판과 "MLTC 제공자 게시판" 페이지를 구독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